



공공전세 3차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 12. 23.]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한시적('21~'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1.12.2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만 우편 접수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부득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청약신청은 27개의 모집단위 중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 원하는 면적의 주택을(면적 범위* 제시)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후 순위 및 신청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2.입주자격 및 순위 참고)
* 60㎡ 미만 / 60㎡ 이상 ~ 70㎡ 미만 / 70㎡ 이상 ~ 80㎡ 미만 / 80㎡ 이상 (실사용면적 기준)
- (1세대 1주택)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및 동호 배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동·호 배정을 위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여 추첨에 따라 선정된 동·호로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자 선정)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추첨결과에 따라 정해진 예비자 우선순위에 따라 미 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3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사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 | | | | | | | | | | |
|----------------------------|---|------------------------|---|------------------------------|---|--------------------------------|---|---------------|---|--------------------------|
| 신청접수 |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 입주자격검증 및 부적격자소명 | ⇒ | 당첨자 발표 | ⇒ | 계약체결 |
| '22.01.10(월) ~ 01.13(목) | | '22.01.19(수) 17:00 | | '22.01.24(월) ~ 01.28(금) | | '22.02.07(월)~ | | '22.02.24(목) | | [개별 안내] '22.03.07(월)~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우편 접수자는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등기에 한해 접수합니다.

*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264호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모집단위 | 모집호수 | 주택 소재지 | 주택명 |
|---------|------|------------------------------------|-----------------|
| 서울방배-1 | 8호 | • 서초구 서초대로15길 8-11(방배동 870-37) | 삼화에코빌1차 |
| 서울상계-3 | 25호 | • 노원구 동일로237라길 19, 23(상계동 1053 외) | 시온빌라트, 시온빌리지 |
| 서울천호-1 | 6호 | • 강동구 올림픽로89길 27-17(천호동 321-20) | 클래시하우스3차 |
| 인천간석-1 | 8호 | • 남동구 동암남로34번길 31(간석동 220-7) | 희망꿈터 |
| 부천원미-1 | 88호 | •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72(원미동 41-3) | 더포레스트 |
| 수원조원-2 | 48호 | •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118번길 7(조원동 664-8) | 프레모아아파트 |
| 안양안양-1 | 2호 | •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11(안양동 421-17) | 휴누림 |
| 안양안양-4 | 1호 | •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55번길 20-11(안양동 518-1) | 부성파인스위트 |
| 의정부가능-1 | 8호 | • 의정부시 평화로 681(가능동 31-24) | 성훈팰리스 |
| 의정부신곡-1 | 8호 | • 의정부시 금신로 296번길 33(신곡동 91-1) | 라운빌 |
| 광주노대-1 | 2호 | • 남구 노대실로 33(노대동 827) | 송화마을휴먼시아 5단지 |
| 광주동천-2 | 3호 | • 서구 동천로 18번길 19(동천동 515) | 동천마을휴먼시아 3단지 |
| 광주산정-1 | 1호 | • 광산구 목련로 15(산정동 1027) | 다사로움2단지 |
| 광주산정-2 | 1호 | • 광산구 목련로 41(산정동 1056) | 부영 애시앙 |
| 광주우산-1 | 1호 | • 광산구 무진대로 278-11(우산동 1589-3) | 한국아텔리움 중해마루힐 |
| 대구사수-1 | 1호 | • 북구 내곡로 89(사수동 789) | 브라운스톤강북 |
| 대구사수-2 | 2호 | • 북구 한강로 17(사수동 833) | 금호서한이다음 |
| 대구대림-1 | 1호 | • 동구 혁신대로 443(대림동 885) | 서한이다음 3차 |
| 대구숙천-1 | 1호 | • 동구 초례로 50(숙천동 388) | 서한이다음 4차 |

| 모집단위 | 모집호수 | 주택 소재지 | 주택명 |
|--------|------|--|-------------------------|
| 대구매곡-1 | 5호 | •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26(매곡리 1537, 1538) | 대실역청아람 1단지, 2단지 |
| 대구서재-1 | 3호 | •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12길 38(서재리 1118) | 에코폴리스 동화 아이위시 1차 |
| 대구서재-2 | 20호 | •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7길 23, 25(서재리 1125, 1131) | 에코폴리스 동화 아이위시 2차, 3차 |
| 대구세천-1 | 7호 | • 달성군 다사읍 세천남로 35(세천리 1703-1) | 제일풍경채 프라임 |
| 대구세천-2 | 7호 | •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60(세천리 1588) | 북죽곡엠코타운 더솔레뉴 |
| 대구세천-3 | 2호 | •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82-10(세천리 1587) | 현대썬앤빌 |
| 대구세천-4 | 4호 | •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87(세천리 1566-1) | 세천한라비발디 |
| 김해삼계-1 | 1호 | • 김해시 해반천로 280(삼계동 1545) | 삼계서희스타힐스 |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최대 6년 거주)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2.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모집권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① 서울·인천·경기 ② 대전·세종·충남 ③ 충북 ④ 광주·전남·제주 ⑤ 전북 ⑥ 대구·경북 ⑦ 부산·울산·경남 ⑧ 강원

☞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02.12.24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 외국인 직계 준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16p)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 순위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 1순위 | 3인 이상 가구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세대구성원 |
| 2순위 | 그 외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 공급단계 | 일정 | 내용 |
|-------------------|---|--|
| 신청접수 | '22.01.10(월) (10:00 ~) '22.01.13(목) (~1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전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해 우편 신청도 받습니다. • 우편접수 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양식을 모두 구비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번 입주자모집공고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순위 및 신청내용은 변경 불가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6p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청약은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4시간 가능합니다. • 부득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2.01.19(수) (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제출 대상자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메뉴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 대상자 서류제출 | '22.01.24(월) ~ 01.28(금) (10:00~16: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류제출도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7p 참고 부탁드립니다. •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제출은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22.02.07(월) 이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당첨자 발표 | '22.02.24(목) (17: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및 예비자 순위는 LH청약센터 및 ARS(1661-77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메뉴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22.03.07(월) 이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예정인 주택 동호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으로 계약체결하고,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잔여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LH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 주택소유 여부 등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당첨자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①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명칭변경)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주)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연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전국]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 모집단위 선택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우편 신청 시 신청서 제출 방법

- 공급신청서(12p)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2.01.10(월)~01.13(목) 신청접수 기간 내 도착하는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우편 신청 시 공급신청서 작성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접수가 불가하며,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양식을 모두 구비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불가)
- 우편접수처 : LH 권역별 주거복지지사(10p 서류제출장소 참고)

■ 서류제출 대상자 우편 또는 방문 서류접수 방법

※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기간 : '22.01.24(월)~01.28(금) 오전 10시~오후 4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우편 제출 시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방문 신청장소 : LH 권역별 주거복지지사(10p 서류제출장소 참고)

5

제출서류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서류제출기간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고일(21.12.2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공사소정양식② (13p)다운로드] |
| 주민등록표등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주민등록표초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가족관계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

■ 추가 제출서류(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주의)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 온라인 서류제출 또는 우편+현장 서류제출 중 한가지를 택하여 서류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인터넷 청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우편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해당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시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오기입 시 당첨 탈락될 수 있고,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후에는 순위, 모집단위 등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기한까지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고문에 안내한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임대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주택개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 후 LH 권역별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주택개방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임) |
| 당첨자 계약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위별로 실시되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며, 추첨으로 정해진 동·호에 따라 계약체결이 진행됩니다. • 모집단위별로 선정된 예비자는 미 계약 주택 발생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p>입주관련 (기금대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보고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과합니다. |
| <p>재계약 자격 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2회 가능합니다.(최대 6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p>기타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 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공전세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7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서류제출 장소

| 공급대상지역 |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연락처 |
|--------|--------|---|--|
| 서울 | 서초구 |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 02-2182-2793 |
| | 노원구 | LH 서울중부권 주거복지지사 [방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인의동), 인의빌딩 1층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인의동), 인의빌딩 10층 | 02-6454-2731 |
| | 강동구 | LH 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A동 2층 | 031-622-2700 031-622-2713 |
| 인천 | 남동구 | LH 인천남동권 주거복지지사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 032-717-5249 032-717-5218 032-717-5224 |
| 대구 | 북구 |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 053-210-8316 053-210-8317 |
| | 동구 | LH대구동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 | 053-960-3627 053-960-3600 |
| | 달성군 | LH 대구서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로 441, 5층 | 053-610-9923 053-610-9925 |
| 광주 | 남구, 서구 | LH 광주동남권 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그랜드타워 4층 | 062-411-4130 062-411-4131 062-411-4134 062-411-4148 |
| | 광산구 | LH 광주광산권 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우산동), 우산행복주택 상가동 3층 | 062-441-2986 |
| 경기 | 수원시 | LH 수원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광교안효빌딩 11층 | 031-323-9132 |
| | 안양시 | LH 안양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 031-467-5728 031-467-5743 |
| | 부천시 |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81, 동화빌딩6층 | 032-450-8267 |
| | 의정부시 | LH 의정부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8층 | 031-822-4025 031-822-4026 |
| 경남 | 김해시 |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70(부곡동) 2층 국민은행 장유지점 옆 | 055-907-8100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 |
|-------|--|
| 문의사항 | LH 콜센터 1600-1004 |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2021. 12. 23.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공전세주택 공급신청서 | | 접수번호 | |
|---|---|---|----------------|
| 주택 신청 유형 | 신청 주택군 | 공고문 2~3p '모집단위' 참고 | |
| | 면적 (실사용면적 기준) | <input type="checkbox"/> 60㎡ 미만 / <input type="checkbox"/> 60㎡ 이상 ~ 70㎡ 미만 / <input type="checkbox"/> 70㎡ 이상 ~ 80㎡ 미만 / <input type="checkbox"/> 80㎡ 이상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은 1개의 주택군(공고문 2페이지에 제시된 '모집단위')만 선택해야하며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이외 지역에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고문 '2.입주자격 및 순위' 「모집권역」 참고) 3. 신청 이후 주택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집 전 화() - | 가구원수 (태아포함) |
| 신청자격 | 1순위 | <input type="checkbox"/> 3인 가구 이상 | |
| | 2순위 | <input type="checkbox"/> 그 외 | |
| 주 택 및 자 산 현 황 | <input type="checkbox"/> 무주택 *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 여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상기 신청서 내용 누락으로 인한 서류 미 접수 및 허위로 인한 탈락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지역본부장 귀하 | |
| 본인은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 여부 등 자격요건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동의 | 개인정보 내역 |
|----|--------------------------|--|
| 기본 | <input type="checkbox"/> |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 소득 | <input type="checkbox"/>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 자산 | <input type="checkbox"/>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 기타 | <input type="checkbox"/>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같은 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항목 |
|--------------------------------------|--|---|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추가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 카드사, 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주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이정회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
| 우정사업본부 |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
| 전산관리지정기관 |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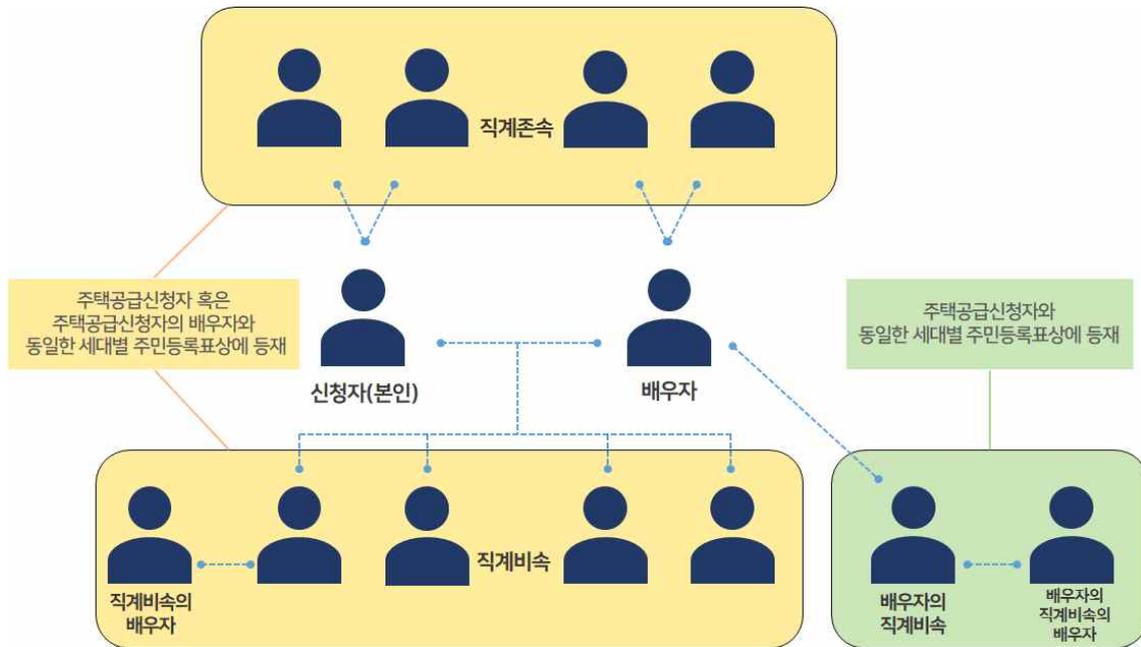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전세형) 세대구성원 범위

*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 시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의 범위

| 세대구성원 | 비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소득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